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과 간접흡연의 정의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는 흡연과 간접흡연의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흡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흡연 행위가 아니더라도 담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흡연의 정의도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간접흡연이 단순히 흡연자의 옆에서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흡연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

정하여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에서는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